

##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 개정안

제정	2012. 3. 5.
제1차 개정	2012. 12. 1.
제2차 개정	2015. 9. 1.
제3차 개정	2016. 4. 12.(공포 3.11.)
제4차 개정	2016. 4. 12.(공포 5. 4., 고령자 소급적용)
제5차 개정	2017. 4. 1.(공포 2. 3.)
제6차 개정	2019. 1. 1.(공포 2018. 12. 28.)
제7차 개정	2020. 6. 24.(공포 2020. 6. 26.)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주차장법」 「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따라 강남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일된 업무체계 정립과 올바른 민원처리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라 함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4.1.>
2. “지정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획 내 지정번호가 표시된 주차장을 배정받아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법정동(洞)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1.1.>
4. “업무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 소재지 법정동(洞)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
5. “일반주차”란 전용주차와 달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획 내에서 누구나 배정을 받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9.1.>
6. “전용주차”란 일반주차와 달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대문 앞(점포 앞)출입구 등에 건물주 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주차구획 설치 후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7. “함께쓰기(1+1)”라 함은 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타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 구획을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
8. “잠시주차제”라 함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4.1.>
9. “스마트 공유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호 신설 2020.6.24.>

### 제3조(운영시간)

-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전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야간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운영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
- ②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일, 주간, 야간,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1., 2020.6.24.>

### 제4조(주차요금 및 감면)

- ① 주차요금 및 감면은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1.>
- ② 주차요금은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규칙 제8조)
- ③ 주차요금할인 감면에 대해서는 본인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요금할인 감면이 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요금할인 감면이 가능하다.
  - 1.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이며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④ 할인감면 대상자 또는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2면 이상 사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은 1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단, 중복 할인불가)
- ⑤ 제3항에 따라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주차요금 할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24.>
- ⑥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주차요금할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막내 자녀가 만13세 이하 가정의 경우로 주민등록표상(서울시)의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가능하다. <개정 2019.1.1.>
- ⑦ 요금감면 할인대상 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는“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1.>
- ⑧ 주차요금 할인대상 변경 시 요금할인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일할 적용(소급적용 불가)하며, 할인요금 적용 후 할인대상 적용변경(주민등록부, 자동차원부 등)사항 발생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취소함은 물론, 서류 변경일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별도 부과한다. <개정 2015.9.1.>
- ⑨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개 항목 이상 해당 시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별표1)
- ⑩ 공유사업 요금 중 **함께쓰기 및 스마트공유주차제 참여자의** 요금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 2020.6.24.>

## 제5조(신청자 접수)

-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5.9.1., 2020.6.24.>
-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규사용, 갱신 또는 변경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규칙 제2조의2)
-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인터넷(<https://gn.gncity.or.kr>)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20.6.24.>
- ④ 거주자 주차구획의 사용 신청은 주거지(법정동) 주민이어야 하며 업무자 주차구획의 사용 신청은 해당(법정)동 사업장의 상근자 이어야 한다. 단, 기 사용자가 주차구획을 배정 받아 이용 중에 주소지를 변경(타동 전출)한 경우에는 확인된 해당분기까지 사용하도록 하되, 업무자로 간주하여 사용요금을 변경부과 한다. 또한 미배정면으로 대기자가 없을 경우 타동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19.1.1., 2020.6.24.>
- ⑤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차량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임대계약서)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0.6.24.>
-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기 신청자중 개인정보 및 할인사항 발생 시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주자 프로그램(홈페이지)에 변동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 ⑦ 공유사업 “함께쓰기(1+1)”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8호, 9호 서식에 따라 주 사용자와 공유자 간 협약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6.24.>
- ⑧ 공유사업 “잠시주차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6.24.>
- ⑨ 공유사업 “스마트공유주차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앱을 다운받아 공유 요일, 시간 등을 설정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시간에 따라 차기 순환배정 시 배정점수를 [별표 3]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6.24.>

**제6조(배정제외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 배정을 제외한다. 다만, 배정제외 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최초(수시)배정 시에만 확인하되,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과태료 체납에 대해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3조) <개정 2020.6.24.>

1. 2.5 t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3.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시 교통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개정 2015.9.1., 2020.6.24.>
4.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5.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6. 해당 주차면에 비하여 차량 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탑차 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 제7조(주차구획 배정 및 배정 우선순위 선정기준)

-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은 1인 1면을 원칙으로 전일제 신청자에게 우선배정 할 수 있다. 다만, “함께쓰기(1+1)” 등 공유 주차구획은 1개 면을 2인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② 주차구획의 신규 배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표3”의 우선순위 배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인에게 배정하되 1순위자가 4시간내에 사용의사(문자전송 등 기록 보존)가 없거나 연락 부재 시에는 차 순위 자에게 배정한다. (별표3) <개정 2019.1.1.>
- ③ 배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주차구획을 선 배정한다.
- ④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 인근 주차구획 대기희망 시 최초 신청 대기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되, 대체 주차면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 <개정 2020.6.24.>
- ⑤ 우선주차구획은 2년 단위로 순환 배정하되, 수시 배정하는 주차구획은 순환배정 잔여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 <개정 2020.6.24.>
- ⑥ 함께쓰기 참여자는 사용자 취소 시 함께 취소한다. <신설 2020.6.24.>

### 제8조(전용 주차구획의 관리)

- ① 대문 및 상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구획을 주민의 신규 설치요청에 따라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 내 거주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에게 배정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 배정한다. <개정 2020.6.24.>
- ② 건물주가 동의한 경우 일반 사용자도 배정 가능하나, 거주지 상관없이 업무자 요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19.1.1.> <개정 2020.6.24.>
- ③ 재건축, 신축, 통행불편 민원 등 전용 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의 민원 발생 시 구획선을 삭선 할 수 있으며, 신청 대기일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대체 주차면 또한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4.>
- ④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용구획신설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폭설 및 도로 침수 등 불편사항 발생시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9.1.>

⑥ 주차구획 신설 및 배정 후 **2개월**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 신청 후 배정을 받아 사용 중에 삭선할 경우는 재 증설은 불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차구획 삭선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삭선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20.6.24.>

### 제9조(사용방법 등)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사람(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6.24.>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부정주차시에는 **공영주차장 3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④ 제2항 및 3항에 따라 견인 조치된 차량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료, 보관료, 부정주차요금(체납 포함)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4.>

⑤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때에는 구역주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제10조(배정취소)** 제9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사용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규칙 제6조)

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19.1.1.>

2.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

4.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5.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6.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7.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9.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10. 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19.1.1.>

**제11조 (사용료 납부방법)**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기단위 선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수납은 불가하다. <개정 2015.9.1>

1.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을 통한 지로고지서 납부
2. 인터넷 웹상에서 신용카드결제 또는 인터넷지로
3. 전용계좌(가상계좌) 입금 <개정 2019.1.1.>
4. “함께쓰기(1+1)”주차구획 사용자별 납부 <신설 2016.4.12.> <개정 2020.6.24.>

## 제12조(주차구획의 설치)

- ① 주차구획 설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강남구청장이 승인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로 너비 6m 이상의 이면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가능하다. (조례 제13조)
- ③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통량이 적고 강남구에서 조건부 증설가능 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
- ④ 주차구획이 설치된 지역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지역적 특성 및 설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강남구 정책에 따라 표지판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강남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 제13조(주차구획의 설치규격)

-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별표 4”와 같다.
- ② 다만, 설치 현장의 도로조건 및 주차차량의 크기를 고려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주차구획의 폐쇄) <개정 2019.1.1.>

- ① 강남구 및 공공기관 등 공문에 의한 삭선요청,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승인된 도로의 주차구획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차구획 폐쇄 안내문 발송 후 삭선토록 한다.
- ② 민원인이 주차구획을 폐쇄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삭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집행, 집단민원, 공사 등으로 통보된 삭선 요청 건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 2020.6.24.>
- ③ 전용주차구획의 경우 재건축, 통행불편 민원 등으로 주차구획의 삭선이 불가피 할 경우

대체구획을 제공치 않으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한다. <개정 2015.9.1.>

④ 전용면으로 배정 후 3개월 이상 미사용(미배정)시는 현장방문 조사 후 직권 폐쇄한다. <개정 2015.9.1.>

⑤ 외부 환경(송진, 새의 분비물, 전신주 등)요인으로 기 사용자가 불편 민원 제기 시 계속사용여부 확인 후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주차구획 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배정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5.9.1., 2019.1.1., 2020.6.24.>

### 제15조(요금징수 방법 등) (규칙 제10조) <개정 2020.6.24.>

① 우선주차구획의 **요금징수** 기간은 분기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9.1.1., 2020.6.24.>

②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분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6.24.>

③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승인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 제16조(관리책임) (규칙 제11조)

① 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차량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차량소유자인 본인에게 있다.(본 조항내용은 **홈페이지**, 신청서 등에 별도 명시한다) <개정 2020.6.24.>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관리하자로 사용승인 차량이 손괴된 경우에는 수리 또는 수선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상하되, 피해금액의 산정은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별표6” 자동차정비업소의 견적에 따른다.

④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승인 대상 주차구획 및 관련 시설물의 훼손 시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함은 물론, 주차장 고유번호 표시 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불가 상황(차량간격 근접 등 리프트 작업 불가) 발생 시는 차주에게 이동 조치를 명하고 사용자에게는 인근 주차구획 등 임시 주차토록 안내하며 부정주차 단속(견인)을 유예 조치한다. <개정 2015.9.1.>

- ② 부정주차 단속처리 절차는 “별표5”와 같다.
- ③ 제9조를 위반하여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규칙 제5조)
- ④ 부정주차시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규칙 제5조)
- ⑤ 부정주차 시 배정 사용자의 불편신고가 없으면 서울시 공유사업의 취지를 살려 선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단, 상습 부정주차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1.1.>

### 제18조(피해보상 및 환불) (규칙 제11조)

- ① 우선주차 사용승인 차량의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불금액 산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 2020.6.24.>
- ② 공단은 우선주차구획의 사용 승인 차량의 착오 견인 또는 주차요금 부과 시에는 견인료, 보관료 및 주차요금 등 피해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단 과실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20.6.24.>
- ③ 시설물의 관리하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결과** 환불사유가 발생 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불여부 검토 후 해당금액은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5.9.1., 2020.6.24.>

### 제19조(주차요금 체납처분)

- ①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에게 대해 행정정보 전산망인 즉시감면서비스 등을 통해 할인자 또는 사용자 주소지 변동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 ③ 배정대상자 여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무자 요금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5년간 소급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도중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거주자요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부정승계를 받아 업무자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④ 배정대상자 여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요금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5년간 소급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할인요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 도중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할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또는 타인이 그 요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할인자 요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 도중 할인 관련서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⑤ 환수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0조(삭선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2019.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주차관리부장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강남구 주민

3.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직능·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삭선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19.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 설치된 주차구획의 삭선을 요청한 경우

2. 건물의 신축 등으로 주차구획 삭선을 요청한 경우

3. 기 설치된 주차구획이 법적 설치근거에 부적합한 경우

4. 건물주가 전용 주차구획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등

②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차구획 삭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이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점수는 2020년 7월 8일까지 부여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정기준에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한다.

② 별표 2의 요금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